##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상법위반·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변호사법위반·사기미수·배임증 재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



## 배임수재·사기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1. 6. 2014고합474,542(병합),616(병합),668(병합),821(병합)]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배종혁, 유종완, 이경식(기소), 김지완, 이선혁(공판)

【변호인】 법무법인 더펌 외 8인

## 【주문】

피고인 1을 판시 제1 죄, 제2 죄 및 제5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에, 판시 제5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,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,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, 피고인 4를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,000만 원에, 피고인 5(대판:피고인 4)를 벌금 1,000만 원에, 피고인 6을 징역 1년에, 피고인 7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1, 피고인 4, 피고인 5(대판:피고인 4)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6, 피고인 7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1로부터 19억 원을, 피고인 2로부터 6,000만 원을, 피고인 3으로부터 4,000만 원을, 피고인 4로부터 74,800,600원을 각 추징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【이유】

【이유】

[이유]

]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【이유】

]

【이유】

]

【이유】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【이유】

]

【이유】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